

KC EMC Update

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 재분류

제조사 등이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유형, 적용 기술기준 등을 보다 쉽게 이해, 확인할 수 있고 업체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 고시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.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 2019-12호(2019-07-23)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제목	항목	내용
적합성평가 기준별로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재배열	제3조	업무 관계자 등이 적합성 평가 기준 및 기기부호 등을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 1, 2, 3 및 7 일부를 별표 1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재배열
적합성평가 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 대상 확대	제20조 제1항	적합성평가를 받은 유선 팩스 모듈 및 완구용 모터를 장착하는 기자재의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생략하도록 개선
일부 대상기자재를 적합인증에서 적합등록으로 재분류	별표 1	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해당되는 23종의 무선기자재와 방송공동수신설비 등 18종의 유선기자재를 적합인증에서 적합등록으로 재분류
일부 대상기자재를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에서 자기시험 적합등록으로 재분류	별표 1	자동차 기기류 및 기타 조명기구 2종을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에서 자기시험 적합등록으로 재분류
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에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분리 추가	별표 1 제7호 다목	‘단말장치 기술기준’ 제15조 3 신설에 따라 기존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에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처리기기를 분리하여 추가
적합성평가 표시방법 관련 규제 완화	별표 5 제2호 라목6	모든 수입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병행수입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통관시 제품 표면에 부착할 적합성 평가 스티커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제품 표면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

* 본 내용은 “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” 공문에 준해 작성되었으며, 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(<http://rra.go.kr>)에서 확인가능합니다.



적합인증에서 적합등록으로 재분류된 “5.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”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자계유도식 무선기기
-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- 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무선기기
- RFID 용 무선기기
- USN용 무선기기
-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
-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,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중 SAR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(SAR 적용 기준 : 20cm 이내 사용 20mW이상 출력 발생제품군)

저희 인터텍은 국립전자연구원 지정 시험소로 국내 KC 전자파적합성 등록에 대해 시험부터 등록까지 모든 업무를 원스탑으로 진행해 드립니다.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인증까지 진행을 하신다면 보다 편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시험 및 인증 업무 뿐 아니라 참여 대여 및 디버깅 업무도 제공하오니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상담가능합니다. 예약 서비스 실시로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전자파 서비스를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.



인터텍이티엘셈코(주)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 160번길 3, 인터텍빌딩(당정동) 15845
www.Intertek.co.kr

+81 31 8069 3702 +82 31 8069 3715 +82 31 8069 3714
Luichel.lee@intertek.com Luna.park@intertek.com Zinna.han@Intertek.com